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0.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8. 9. 1)

상정, 심사, 보류

제13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8. 10. 21)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ㄱ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종 철

가.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규정에 의거 경력직 지방공무원은 정년퇴직일전 공로연수가 가능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상한연령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공로연수 실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주기위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4조제12항 신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의 규정에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준비 휴가근거 조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자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련법규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 제24조 제12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8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던 동 조례 제24조제8항을 2005년 12월 29일 삭제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이 2006년 1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건의 내용은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타 지방자치단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례가 없는 사항이며, 또한 특정인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동 건은 추후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확정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